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사내대학원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사내대학’을 ‘사내대학·대학원’으로 용어 변경
(안 제14조, 제14조의2, 제18조의2, 제24조)

나.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사내대학’을 ‘사내대학·대학원’으로 용어 변경

다.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전문학사’를 ‘전문학사 또는 석사학위과정만 운영하는 사내대학원’으로 용어 변경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을 “(사내대학·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내대학”을 “사내대학·대학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사내대학 형태”를 “사내대학·대학원 형태”로, “사내대학”을 “사내대학·대학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내대학”을 “사내대학·대학원”으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사내대학 변경인가의 신청)”을 “(사내대학·대학원 변경인가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내대학의”를 “사내대학·대학원의”로, “사내대학 변경”을 “사내대학·대학원 변경”으로 한다.

제18조의2 후단 중 “사내대학”을 “사내대학·대학원”으로 한다.

제24조제2호 중 “사내대학”을 “사내대학·대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제목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인가신청서)”를 “사내대학·대학원 설치계획서(인가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 앞쪽 중 “전문학사”를 “전문학사 또는 석사학위과정만 운영하는 사내대학원”으로 하고, 같은 앞쪽 중 “사내대학”을 “사내대학·대학원”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제2호 및 제4호 중 “전문학사”를 각각 “전문학사 또는 석사학위과정만 운영하는 사내대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제목 “사내대학 변경인가 신청서”를 “사내대학·

대학원 변경인가 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13호의3서식 앞쪽 중 “사내대학”을 “사내대학·대학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사내대학·대학원 설치계획서(인가신청서)

(앞쪽)

신청인 (대표자)	신청자(공동 설치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산업체명	전화번호
	(상시)종업원 수 ※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을 포함하여 적되, 고졸 종업원 수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신청 내용	명칭
	목적
	설치자 (공동 설치의 경우 산업체를 모두 적음)
	위치
	운영규정(학칙) ※ 학칙 내용으로 같음함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전문학사 또는 석사학위과정만 운영하는 사내대학원의 경우 2년) ※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서로 같음함
	교육·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현황 ※ 현재 교육·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현황표로 같음함
개교 예정일	

「평생교육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내대학·대학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	-------	------------

첨부서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학칙 1부
 2.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서(전문학사 또는 석사학위과정만 운영하는 사내대학원의 경우 2년) 1부
 3. 교육·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 현황표 1부
 4. 향후 4년간 교육·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서(전문학사 또는 석사학위과정만 운영하는 사내대학원의 경우 2년) 1부
 5. 실습시설 및 설비확보 계획서 1부
 6. 교원확보 계획서 1부
 7. 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각 1부
 8. 위치도 1부
 9.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1부
 10.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
- ※ 인가신청서 제출 시에는 설치계획서에 따른 교원 등 확보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대신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신분증 확인으로 갈음합니다)
2. 건축물대장 등본
3. 토지대장 등본
4. 지적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분증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동의할 필요가 없으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확인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내대학·대학원 변경인가 신청서

(앞쪽)

신청인 (대표자)	신청자(공동 설치의 경우 설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사항	변경 내용 (※ 명칭, 목적, 설치자, 위치 중 해당사항 기재)	
	변경 연월일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 별첨 작성 가능	

「평생교육법」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에 따라 위와 같이 사내대학·대학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교육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	-------	------------

첨부서류		
변경사항	신청인 제출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명칭	정관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대신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신분증 확인으로 갈음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 등본 4. 토지대장 등본
목적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 목적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설치자	이사회 회의록, 법인등기부 등본 등 설치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위치	1. 위치도 1부 2. 시설배치도 1부 3.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 4. 영 제40조에 따른 교사 면적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분증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동의할 필요가 없으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확인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		제14조(사내대학 · 대학원 설치인		
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내		가 신청) ① ----- 사내		
대학 설치계획서(인가신청서)		대학 · 대학원 -----		
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		
다.				
② 영 제36조제1항에서 “교육		② -----		
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		2. 사내대학 · 대학원 형태----		
설(이하 “사내대학”이라 한		----- “사내대학 · 대학원”		
다)의 재산이 다른 사람 소유		-----		
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		
의 사본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③ ----- 사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인가신청		내대학 · 대학원 -----		
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		-----		
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		-----.		
만,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의		-----		
경우 신청인이 제시하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등 신원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신분증의 제시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 4. (생략)

제14조의2(사내대학 변경인가의 신청) ① 영 제36조의2에 따라 사내대학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13호의3서식의 사내대학 변경인가 신청서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18조의2(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의 신청 등)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14조

-----.

1. ~ 4.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사내대학·대학원 변경인가의 신청) ① -----
사내대학·대학원의 -----
----- 사
내대학·대학원-----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의 신청 등) -----

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u>사내대학</u>”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24조(직인의 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1. (생략) 2.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u>사내대학</u> 3.·4. (생략)	-. ----- “<u>사내대학·대학원</u>” ----- -----. 제24조(직인의 관리)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u>사내대학·대학원</u> 3.·4. (현행과 같음)
---	--